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 1159호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조 례

- 조례 제1174호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 조례 제1175호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5
- 조례 제1176호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 13

훈 령

- 훈령 제2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감사담당공무원 복무 수칙 16

예 규

- 예규 제72호 인천광역시남동구감사사무처리요령 일부개정규정 23

공 고

- 공고 제2014- 432호 2014년 등산로 정비사업 시행 공고 35
- 공고 제2014- 495호 2014년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37
- 공고 제2014- 505호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람 39
- 공고 제2014- 510호 업무개시 명령 40
- 공고 제2014- 519호 무등록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의뢰 47
- 공고 제2014- 520호 2014년 제3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수
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49
- 공고 제2014- 525호 공인사고(분실)에 따른 공인 폐기 공고 51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 | | | | | |
|-----------------------|-----|--|-------|----|
|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4- | 19호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 공고 | | 52 |
|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4- | 20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 공
시송달 공고 | | 53 |

고 시

- | | | | | |
|-------------|-----|----------|-------|----|
| ○ 고시 제2014- | 43호 | 업무개시 명령 | | 55 |
| ○ 고시 제2014- | 44호 | 도로명주소 고시 | | 62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4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17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9. 7. 31. 제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사항 외에만 대통령령 및 조례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인천시 및 타 지자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조례 없이도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가능한 사항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4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17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구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구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구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구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구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 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구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실장(국·실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실·소장(국·실·소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구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구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 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구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구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

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구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근거하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현장 관리를 통해 안전한 남동구를 건설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목적 명시 (제1조)
- 재난현장 대응업무에 관한 사항 설명 (제2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 규정 마련 (제4조)
-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제5조)
- 현장지휘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명시 (제7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명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 명시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명시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 명시 (제22조)
-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 명시 (제23조)
- 구 대책본부장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명시 (제24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4년 3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17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공고 한다.

제12조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조항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을 “위탁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4호 2012. 2. 3. 공포, 2012. 2. 5. 시행) 별표 제8의2의 신설 이후에 위탁 받은 운영자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른 상위법령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기간 만료 후 재위탁 가능 방식을 공개경쟁 모집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보육체계 구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1인일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 단서조항 신설 (제11조제1항)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위탁방법 변경 (제12조)
 -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 위탁 기간 만료 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변경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감사담당공무원 복무 수칙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4년 3월 12일

남동구 훈령 제2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감사담당공무원 복무 수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공무원의 복무자세와 감사활동 등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감사관을 포함한 감사실 직원과 감사와 관련하여 타 부서 등에서 차출된 공무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제2조 규정의 대상자는 이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복무자세

제4조(감사정보의 외부누설 금지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개된 정보는 누구라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이권청탁행위 등 금지)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공무원 및 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사, 인·허가 등 각종 이권에 대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감사권한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직계가족구성원의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감사활동

제6조(감사준비) ① 감사반장은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목적·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실시전에 자료수집 및 착안사항의 연구·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외부전문가를 감사활동에 활용할 때에는 전문성 및 독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관계인신고서 등의 제출)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특수관계인신고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실지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귀청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타 부서 등에서 차출된 감사담당공무원은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피감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담당공무원은 겸손한 자세와 친절한 언행으로 피감사자를 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상황 보고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실시 사항을 일일감사상황 보고 등을 통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치토록 하거나 그 처리방향을 임의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증거자료 수집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증거서류 등의 제출과 수감기관 직원의 출석요구 등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주요사건의 사전조치) 감사반장은 적출된 사항 중 관계직원의 신상과 관련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관장 또는 직속 상급자에게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비용 부담금지) 감사담당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활동에 부수되는 비용을 수감기관에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감사결과 처리 및 보고) ① 감사결과처리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구민과 구 또는 국가 전체에 유익하고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보고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공정성·정확성 및 객관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실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그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특수관계인 신고서

(제7조제1항 관련)

본인은 감사, 조사, 민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 조사, 민원조사사항 관련자중 특수관계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특수관계인 인적사항			특수관계인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신 고 인 : 소속 직 성명 (인)
감사, 조사, 민원조사반장(공람) : 소속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제7조제3항 관련)

본인은 이번 감사, 조사, 민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하고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고 추호라도 사적이나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외부압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영향을 받아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왔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소속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개정에 따라 감사담당자 복무수칙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감사담당자의 복무자세 및 감사활동에 따른 준수 의무와 책임 등 복무수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감사담당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담당자의 복무자세 (제4조 및 제5조)
 - 감사정보의 외부누설 금지
 - 이권청탁행위 등 금지
- 감사활동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 특수관계인신고서 등의 제출
 - 감사비용 부담금지
 - 감사결과 처리 및 보고 등

예 규

인천광역시남동구감사사무처리요령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4년 3월 12일

남동구 예규 제72호

인천광역시남동구감사사무처리요령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감사사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감사사무처리요령”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감사사무 처리 요령”으로 한다.

제1호가목 중 “매년 11월 말일까지 익년도의 종합감사계획 및 부분감사계획을 인천광역시시장의 조정통제를 받아 늦어도 12월 말일까지 피 감사기관에 시달함”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시달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각 실·과에서”를 “각 부서(기관)에서” 및 “감사실과 협의 시행한다.”를 “감사실과 협의 후 시행한다.”로 각각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각 실·과, 소, 동에서”를 “각 부서(기관)에서”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자체감사규칙 제11조”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15조”로 각각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전언보고할 것이며”를 “구두로 보고하고”로 한다.

제2호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무원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제2호 본문 중 “공무원 비위”를 “공무원 범죄”로 하고, “즉보한다”를 “즉시 보고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1) 중 “비위등의”를 각각 “범죄 등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중 “기타재산등의”를 “그 밖의 재산 등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2) 중 “주무담당(주무)이”를 “부서(기관)장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사건발생시 전화보고”를 “사건발생 시 보고”로 하며, 같은 목 (1) 중 “전화로 보고”를 “구두로 보고”로 한다.

제3호다목(3)(아) 중 “기타사항”을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목 (3)(자)1) 중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 및 “기타중앙부처”를 “그 밖의 중앙부처”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중 “각 실·과, 소, 동장은”을 “각 부서(기관)장은”으로 한다.

제4호 본문 중 “감사관증 휴대등”을 “감사관증 발급 등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2)(다) 중 “타 실·과”를 “다른 부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목 (2)(라) 중 “피 감사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며, 같은 목 (2) (마)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교부대상”을 “발급대상”으로 하며, 같은 목 중 (가) 및 (나)을 삭제하며, 같은 목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

제4호 나목(2) 중 “교부요령”을 “발급요령”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자체감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라” 및 “감사실장의 발급요구에 의거 총무과 인사팀에서 발급함”을 “감사실에서 발급함”으로 각각 하며, 같은 목 (2)(나) 중 “감사관증은 타 목적에 사용치 못하며”를 “감사관증은 감사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및 “감사관증을 교부받은”을 “감사관증을 발급받은”으로 각각 한다.

제4호다목 중 “피 감사기관 수감사항”을 “감사대상기관 유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목 본문 중 “피 감사기관은”을 “감사대상기관은” 및 “일체 감사에 응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감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음”으로 각각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감사 실시 결과 보고서

(제1호다목(1) 관련)

감사대상 기관	감사 기관	감사관 직·성명	조치사항					위법 부당 사항	모범 사항
			시정	주의	개선	변상	권고		

- 주) 1. 조치사항란에는 건수를 기입하고 내용은 별첨할 것
 2. 위법·부당사항은 별첨하여도 무방함
 3. 모범사항란에는 표창 공무원에 대하여 기술할 것
 4. 건의사항은 별첨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감사 일보

(제1호다목(2) 관련)

감사관	감사내용	지적사항	자료제출사항 (질문서, 확인서, 기타)

[별지 제3호 서식]

감사사항 보고서

(제1호다목(3) 관련)

감사대상 기 관	감사기관	감사관 직·성명	감사에서 지적된 중요사항	비고

- 주) 1. 감사에서 지적된 중요사항란에는 확인서, 진술서, 답변서의 제출사항과 중요 문답
요지를 기록할 것
2.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별지로 하여도 무방함
3. 사본을 제출한 것은 별첨토록 할 것

〔별지 제4호 서식〕

범죄 발생 통보서

(제2호가목(1) 관련)

1. 행 위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			
2. 범행사실	사건명			
	내용			
3. 관계기관의 조 치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고발여부 및 소송 진행상황			
4. 기타	참고자료			

※ 작성요령

1. 2명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범행 당시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그 당시 사항을 기재한다.
3. 6하 원칙에 따라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망실, 훼손 통지서

(제2호나목(1) 관련)

1. 회계관계 직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회계직 관리기간			
2. 망실, 훼손 사실	사건명			
	내용			
	발생 또는 발견동기			
	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	자체변상 명령일자, 금액 및 납입기한			
	소송제기일자 및 진행상황			
	징계(또는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기타	참고자료			

※ 작성요령

1. 2명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명 이상으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망실·훼손 당시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그 당시 사항을 기재한다.
3. 6하 원칙에 따라 망실·훼손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태만여부를 상세히 기재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4. 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전말 보고서
(제3호다목(1) 관련)

제 목	처분요구 내 용	처분청	처분요구 요지	처리전말	완결 여부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감사 통제부

(제4호가목(2) 관련)

통제월일	감사종류	감사대상 및 기간	감사관	주관부서	통제자	
					감사담당	감사실장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감사사무 처리 요령의 미비점 개선 및 개정된 규칙과 일치시킴은 물론 감사계획 수립, 감사실시 및 결과보고 등 감사사무의 세부적인 처리요령을 제시하여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감사계획 시달 시기 변경 : 전년도 12월말 ⇒ 당해 연도 1월 31일
- 감사관증 발급
 - 발급대상 : 자체감사반원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추가(개정규칙에 의거)
 - 발 급 처 : 총무과 인사팀 ⇒ 감사실
- 그 밖에 미비점 및 용어 정리 등
 - 전언보고 ⇒ 구두보고
 - 공무원 비위 ⇒ 공무원 범죄
 - 피 감사기관 ⇒ 감사대상기관
 - 현행 규정의 별지 서식 누락분 재정비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432호

2014년 등산로 정비 사업 시행 공고

2013년 등산로 정비공사와 관련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4년 3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14년 등산로 정비사업
2. 위 치 : 만수동 1-2번지 7필지(만수산)
3. 공고기간 : 2014. 3. 11 ~ 2014. 3. 30(20일간)
4. 대 상 지 : 붙임내역 참조
5.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동의 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 기타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산림생태팀 (453-28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년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 조서 1부. 끝.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 지번별 조서

연번	소재지			지적(㎡)	구분	등산로 정비 내역	정비사항	소유자		비고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1	남동	만수	산1-2	246,236			안전로프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김남*	
2	남동	만수	산1-4	169,560			노면정비, 안내판 교체		국방부	
3	남동	만수	산2-1	59,899			노면정비, 배수대 설치		산림청	
4	남동	만수	산2-2	209,414			데크설치, 노면정비, 안내판정비		산림청	
5	남동	만수	산6-2	137,891			노면정비, 배수로 설치		산림청	
6	남동	만수	산8-20	16,373			목재계단 설치		산림청	
7	남동	만수	80-12잡	1,829			노면정비 목재계단 보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주)**가공센터	
									인천광역시	
8	남동	장수	산65-1	158,280			야자매트 설치		학교법인 ***학교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495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4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4년 3월 11일 ~ 3월 31일
- 장 소 : 주택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3년 3월 11일 ~ 3월 31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택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 제출방법 :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14년 공동주택가격(안)」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4년 3월 11일 ~ 3월 31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 용 : 2014년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14년 3월 11일 ~ 3월 31일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점)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2년 4월 24일 개별통지(서면 제출 의견)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제출의견)를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14년 4월 24일 ~ 4월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열람 가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505호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4. 3. 10.
- 제공받은 자 : 아진전산(주)
- 제공목적 : 자동차세 3월 연납? 수시분 및 독촉장(2014년 1월분) 인쇄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세 납세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대상물건, 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지방세 고지서 출력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 2014. 3. 11. ~ 2014. 3. 26. (1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510호

공 시 송 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오는 3월10일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기에 3월10일 당일 환자를 진료하도록 진료명령을 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3.10. 휴진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휴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03.10.~ 2014.03.21.

나. 공시내용 : 업무개시명령

다. 업무개시 명령 대상 : 91개소 의료기관 “불임” 참조

라. 공시사유 : 의료기관 휴진, 폐문 등으로 송달 불가

마. 법적근거 : 의료법 제59조 제2항

바. 문 의 처 : 인천광역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물관리팀(☎032-453-5082)

1. 업무개시 명령 1부.

2. 업무개시 명령대상자 명단. 1부. 끝.

2014년 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 보건행정과-5045(2014.3.10) 호

업무개시 명령

-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 -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지금('14.3.10.) 즉시 환자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휴진 의료기관 91개소 의원 (개설자명 :)
※ 불응 환자

2014. 3. 1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업무개시 명령 공시송달 대상 의료기관

번호	의료기관명	개설자	군구	소재지
1	2010성형외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구월동, 이토타워401호,402호)
2	간석굿모닝의원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17 (간석동)
3	간석메디정형외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76 (간석동, 1~3층)
4	간석밝은안과의원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90, 401호 (간석동, 탐메디칼)
5	견우정형외과의원	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911 (간석동, 신일빌딩3층)
6	고은소아청소년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80 (구월동, 알파프라자3층)
7	구월김안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8, 301호 (구월동)
8	굿모닝비뇨기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16, 구월동동 (구월동, 세동네오스빌딩 402호)
9	김동석이비인후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98 (구월동)
10	김영익정신과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74 (구월동, 206호)
11	김찬식안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80번길 98 (만수동)
12	노상수소아청소년과의원	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90 (간석동)
13	논현사랑내과의원	채**,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8 (논현동, 아이엠프라자 4층일부)
14	논현연세이비인후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83, 202호 (논현동, 중앙프라자)
15	논현연세정형외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14, 6층 (논현동, 에이스타워)

16	논현연세항외과의원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14, 401,402호 (논현동, 에이스타워)
17	다나의원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29-1 (만수동, 2층일부)
18	다인안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18, 405호,406호,407호 (구월동, 퍼스트하임)
19	다정한소아청소년과의원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18 (구월동, 퍼스트하임 208,209,210호)
20	닥터오메디컬의원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69번길 38 (만수동, 2층(1,4,5,6,호))
21	닥터정앤박날씨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10 (구월동, 효명프라자406,407호)
22	담도영이비인후과	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85 (간석동)
23	도담소아청소년과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30번길 1 (구월동, 에이스프라자 2층일부)
24	딸기소아청소년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64, 302호 (논현동, 골든프라자)
25	라임비뇨기과의원	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17, 412호 (논현동, 아이플렉스)
26	만수성심외과의원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65 (만수동)
27	모래내굿모닝내과의원	백**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98, 2층 나호 (구월동)
28	모래내정형외과의원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80 (구월동, 2층일부)
29	뮤즈의원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13번길 15, 408호 (구월동, 메인프라자)
30	미래신경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92 (간석동, 일주빌딩 4층)
31	박무정내과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25번길 4 (남촌동, (2층))
32	박인규내과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38 (구월동)
33	박재홍내과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61 (만수동)
34	박태동산부인과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70 (구월동)

35	베스트항외과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51 (구월동)
36	본비뇨기과의원	홍**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39 (만수동, 로알프라자 302호)
37	본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342번길 3, 2층 (만수동)
38	봄빛소아청소년과의원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3블록 8로트 (2층일부)
39	새샘정형외과의원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18 (구월동)
40	서울365소아청소년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17 (논현동, 아이플렉스 301,302호)
41	서울삼성내과의원	예**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18, 201호 (구월동, 퍼스트하임프라자)
42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8 (구월동)
43	서울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96 (논현동, 주공A상가 203호일부, 204호)
44	서울이비인후과의원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구월동)
45	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8 (구월동, 로데오피라자 502호)
46	서울하정외과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4, 801호 (구월동, 벽성빌딩)
47	서창내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137, 2층 (서창동)
48	성모류마내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23, 305호 (구월동, 위너스프라자)
49	세란내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47 (만수동, 2층)
50	세란성형외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2, 4,5층 (구월동)
51	손지원내과의원	손**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40번길 29, 2층 (구월동, 남동빌딩)
52	순복정형외과의원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28 (구월동)
53	신통외과의원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43 (만수동, 5층전부)

54	심연세이비인후과의원	심**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20, 403호 (논현동, 명진프라자)
55	안흥부외과의원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51 (간석동)
56	양소아청소년과의원	양**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 441 (논현동, 203호)
57	연세돌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함**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94-1 (구월동)
58	연세수소아청소년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2, 204호 (만수동, 향촌메디칼)
59	연세에코비뇨기과의원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14, 301.302호 (논현동, 에이스타워)
60	연세예소아청소년과의원	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21, 301호 (논현동, 에스닷몰)
61	연세에피부과의원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81 (논현동, 광성프라자 3층일부)
62	연세이비인후과의원	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57 (간석동, 그린상가 3층)
63	열린이비인후과의원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RC 14-4롯데 2층
64	염도학소아청소년과의원	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8 (만수동, 반달프라자301호)
65	에스메디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7 (만수동)
66	오케이재활의학과의원	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8 (구월동, 수정빌딩 401,402호)
67	우리내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65 (만수동, 3층일부)
68	우리정형외과의원	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84, 1,4,5층 (구월동)
69	우먼산부인과의원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83, 304호 (논현동, 중앙프라자)
70	유앤미비뇨기과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74, 302호 (구월동)
71	이앤박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의원	박**,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 504호 (논현동, 아름다운타워)
72	이준승내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32, 2층 (구월동, 케이씨씨)

73	인천속내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93, 2층 (간석동, 중앙빌딩)
74	인하메디스의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17 (만수동)
75	장수찬신경외과의원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13번길 15 (구월동)
76	전내과의원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117 (만수동)
77	정우식소아청소년과의원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호구포로535번길 24 (광천빌딩2층)
78	조앤문소아청소년과의원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35, 314호 (논현동, 칼리오페)
79	조은아산내과의원	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2 (논현동, 명진프라자 402호)
80	참조은내과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एको중앙로156번길 5-19, 2층 (논현동)
81	코아이비인후과의원	양**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21, 401,403호 (논현동, 에스닷몰)
82	쿨맨남성의원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70-1 삼성디지털프라자 8층
83	키즈웰소아청소년과의원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59 (간석동, 보인프라자401호)
84	필의원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23, 303,304호 (구월동, 위너스프라자)
85	한사랑이비인후과의원	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17, 404호 (논현동, 아이플렉스)
86	한양신경과의원	이**,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4 (구월동, 벽성빌딩2층일부)
87	해맑은소아청소년과의원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96 (구월동)
88	행복드림의원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8 (구월동, 5층, 6층일부)
89	홍외과의원	홍**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70 (구월동)
90	후생의원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772 (간석동)
91	Dr.송내과의원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45 (만수동, 희망프라자301호)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519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 구 관내 공공용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 등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사고 및 범죄이용 가능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예방코자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4. 03. 11 ~ 03. 30 (20일 간)
2. 강제처리(폐차) 예정 : 2014. 03. 30 이후
3. 강제처리(폐차) 대상 : 번호미상(소유자 미상) 이륜차 26대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4년 03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연번	소유자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보관장소	차량사진
757 (2006)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남동공단 지구대 앞	서 울 폐 차 사 업 소 (032-442-6660)	
422 (2008)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만수3동 853-7 산호출 타운주차장내	서 울 폐 차 사 업 소 (032-442-6660)	
115 (2013)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간석3동124-1호(석모 도 횡집) 주차장 내(사 유지)	인 천 폐 차 사 업 소 (032-814-7077)	
124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간석3동 54-19호 (팬 더빌라) 앞	대 신 철 강 폐 차 사 업 소 (032-569-5511)	
130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간석3동37-647호 궁 전빌라 나동 주차장 내	대 신 철 강 폐 차 사 업 소 (032-569-5511)	
131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구월4동 1312-6호 벽 산@ 2동 자전거보관 대	대 신 철 강 폐 차 사 업 소 (032-569-5511)	
153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구월3동 1359-10호 경기오토바이 앞	기 전 폐 차 사 업 소 (032-814-4400)	
158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고잔동 620번지 대성 모터펌프 앞 (사용 폐지된 번호판 부착)	인 천 폐 차 사 업 소 (032-814-7077)	
234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간석3동113-6호 수피 아 오피스텔 주차장 내	대 신 철 강 폐 차 사 업 소 (032-569-5511)	
273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간석2동 지구대(래미안 @ 단지 내)	대 신 철 강 폐 차 사 업 소 (032-569-5511)	
334	미상	미상 (무등록)	이륜차	만수5동 941-21호 인 향빌라1동 맞은편 인 도 상	서 울 폐 차 사 업 소 (032-442-666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520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2014년 제3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 와 명칭 :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 및 열람기간 : 2014. 3. 12 ~ 3. 27(15일간)
4. 열람내용 : “붙임” 과 같음
5.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남동구청 건설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토지)

사업명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금 액(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 고	
	동명	지번	지목		면적(㎡)		감정평가업자					사업자 제시액
			공부	실제	공부	편입	대일		알비			
1	장수동	396-5	도	도	229.0	229.0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이씨	
2	장수동	396-2	도	도	29.0	29.0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	
	소 계				258.0	258.0				0		
3	장수동	388-16	도	도	166(1/3)	166(1/3)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원용덕(1/3)	
					166(1/3)	166(1/3)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이승창(1/3)	
					166(1/3)	166(1/3)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오웅섭(1/3)	
	소계				166.0	166.0				0		
4	장수동	388-2	도	도	2(1/3)	2(1/3)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원용덕(1/3)	
					2(1/3)	2(1/3)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이승창(1/3)	
					2(1/3)	2(1/3)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오웅섭(1/3)	
	소계				2.0	2.0				0		
5	장수동	386-12	도	도	8.0	8.0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오정섭	
6	장수동	386-2	도	도	5.0	5.0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	
	소계				13.0	13.0				0		
	합 계				439.0	439.0				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525호

공인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인 폐기 사유

: 공인 사고(분실)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폐기(1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비 고
폐 기 공 인	구월1동장인 (구월1동민원전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4 - 19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공고)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0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폐쇄 공고
2. 공고기간 : 2014. 3. 10 ~ 2014. 3. 24(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업주명	소 재 지	위반사항	행정처분일
일반 음식점	만수1-174	생과일쥬스 전문	정*성	구월로372번길 ○○ (만수동)	시설물멸실	2014.3.10.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식품위생법 제75조)
5. 행정처분일 : 2014. 3. 10
6. 처분사유 : 시설물 멸실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8. 청 문 일 : 2014. 2. 21 (금)
9. 공시송달 청문일 : 2014. 3. 7 (금)
10. 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3)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4 - 2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영업소 폐쇄에 다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4. 03. 12 ~ 2014. 03. 26(15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재지	비고
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131	다올허브다이어트	이*자	소래역로 95, ○○호 (논현동, 냇마을신영지웰)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휴업하는 때
6.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6)
- 청문일시 : 2014. 03. 27. (목)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청사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기 타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식품위생팀 032-453-262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43호

공 시 송 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오는 3월10일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기에 3월10일 당일 환자를 진료하도록 진료명령을 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3.10. 휴진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휴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03.10.~ 2014.03.21.

나. 공시내용 : 업무개시명령

다. 업무개시 명령 대상 : 91개소 의료기관 “불임” 참조

라. 공시사유 : 의료기관 휴진, 폐문 등으로 송달 불가

마. 법적근거 : 의료법 제59조 제2항

바. 문 의 처 : 인천광역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물관리팀(☎032-453-5082)

1. 업무개시 명령 1부.

2. 업무개시 명령대상자 명단. 1부. 끝.

2014년 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 보건행정과-5045(2014.3.10) 호

업무개시 명령

-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 -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지금('14.3.10.) 즉시 환자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휴진 의료기관 91개소 의원 (개설자명 :)
* 별첨 참조

2014. 3. 1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업무개시 명령 공시송달 대상 의료기관

번호	의료기관명	개설자	군구	소재지
1	2010성형외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구월동, 이토타워401호,402호)
2	간석굿모닝의원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17 (간석동)
3	간석메디정형외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76 (간석동, 1~3층)
4	간석밝은안과의원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90, 401호 (간석동, 탐메디칼)
5	견우정형외과의원	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911 (간석동, 신일빌딩3층)
6	고은소아청소년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80 (구월동, 알파프라자3층)
7	구월김안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8, 301호 (구월동)
8	굿모닝비뇨기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16, 구월동동 (구월동, 세동네오스빌딩 402호)
9	김동석이비인후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98 (구월동)
10	김영익정신과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74 (구월동, 206호)
11	김찬식안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80번길 98 (만수동)
12	노상수소아청소년과의원	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90 (간석동)
13	논현사랑내과의원	채**,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8 (논현동, 아이엠프라자 4층일부)
14	논현연세이비인후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83, 202호 (논현동, 중앙프라자)
15	논현연세정형외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14, 6층 (논현동, 에이스타워)
16	논현연세항외과의원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14, 401,402호 (논현동, 에이스타워)

17	다나의원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29-1 (만수동, 2층일부)
18	다인안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18, 405호,406호,407호 (구월동, 퍼스트하임)
19	다정한소아청소년과의원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18 (구월동, 퍼스트하임 208,209,210호)
20	닥터오메디컬의원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69번길 38 (만수동, 2층(1,4,5,6,호))
21	닥터정앤박날씬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10 (구월동, 효명프라자406,407호)
22	담도영이비인후과	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85 (간석동)
23	도담소아청소년과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30번길 1 (구월동, 에이스프라자 2층일부)
24	딸기소아청소년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64, 302호 (논현동, 골든프라자)
25	라임비뇨기과의원	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17, 412호 (논현동, 아이플렉스)
26	만수성심외과의원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65 (만수동)
27	모래내굿모닝내과의원	백**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98, 2층 나호 (구월동)
28	모래내정형외과의원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80 (구월동, 2층일부)
29	뮤즈의원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13번길 15, 408호 (구월동, 메인프라자)
30	미래신경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92 (간석동, 일주빌딩 4층)
31	박무정내과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25번길 4 (남촌동, (2층))
32	박인규내과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38 (구월동)
33	박재홍내과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61 (만수동)
34	박태동산부인과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70 (구월동)
35	베스트항외과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51 (구월동)

36	본비뇨기과의원	홍**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39 (만수동, 로얄프라자 302호)
37	본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342번길 3, 2층 (만수동)
38	봄빛소아청소년과의원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3블록 8로트 (2층일부)
39	새샘정형외과의원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18 (구월동)
40	서울365소아청소년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17 (논현동, 아이플렉스 301,302호)
41	서울삼성내과의원	예**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18, 201호 (구월동, 퍼스트하임프라자)
42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8 (구월동)
43	서울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96 (논현동, 주공A상가 203호일부, 204호)
44	서울이비인후과의원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구월동)
45	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8 (구월동, 로데오피라자 502호)
46	서울하정외과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4, 801호 (구월동, 벽성빌딩)
47	서창내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137, 2층 (서창동)
48	성모류마내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23, 305호 (구월동, 위너스프라자)
49	세란내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47 (만수동, 2층)
50	세란성형외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2, 4,5층 (구월동)
51	손지원내과의원	손**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40번길 29, 2층 (구월동, 남동빌딩)
52	순복정형외과의원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28 (구월동)

53	신통외과의원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43 (만수동, 5층전부)
54	심연세이비인후과의원	심**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20, 403호 (논현동, 명진프라자)
55	안흥부외과의원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51 (간석동)
56	양소아청소년과의원	양**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 441 (논현동, 203호)
57	연세뿔뿔이소아청소년과의원	함**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94-1 (구월동)
58	연세수소아청소년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2, 204호 (만수동, 향촌메디칼)
59	연세에코비뇨기과의원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14, 301.302호 (논현동, 에이스타워)
60	연세예소아청소년과의원	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21, 301호 (논현동, 에스닷몰)
61	연세예피부과의원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81 (논현동, 광성프라자 3층일부)
62	연세이비인후과의원	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57 (간석동, 그린상가 3층)
63	열린이비인후과의원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RC 14-4롯데 2층
64	염도학소아청소년과의원	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8 (만수동, 반달프라자301호)
65	에스메디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7 (만수동)
66	오케이재활의학과의원	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8 (구월동, 수정빌딩 401,402호)
67	우리내과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65 (만수동, 3층일부)
68	우리정형외과의원	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84, 1,4,5층 (구월동)
69	우먼산부인과의원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83, 304호 (논현동, 중앙프라자)
70	유앤미비뇨기과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74, 302호 (구월동)

71	이앤박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의원	박**,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 504호 (논현동, 아름다운타워)
72	이준승내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32, 2층 (구월동, 케이씨씨)
73	인천속내과의원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93, 2층 (간석동, 중앙빌딩)
74	인하메디스의의원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17 (만수동)
75	장수찬신경외과의원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13번길 15 (구월동)
76	전내과의원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117 (만수동)
77	정우식소아청소년과의원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호구포로535번길 24 (광천빌딩2층)
78	조앤문소아청소년과의원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35, 314호 (논현동, 칼리오페)
79	조은아산내과의원	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2 (논현동, 명진프라자 402호)
80	참조은내과의원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एको중앙로156번길 5-19, 2층 (논현동)
81	코아이비인후과의원	양**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21, 401,403호 (논현동, 에스닷몰)
82	쿨맨남성의원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70-1 삼성디지털프라자 8층
83	키즈웰소아청소년과의원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59 (간석동, 보인프라자401호)
84	필의원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23, 303,304호 (구월동, 위너스프라자)
85	한사랑이비인후과의원	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17, 404호 (논현동, 아이플렉스)
86	한양신경과의원	이**,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4 (구월동, 벽성빌딩2층일부)
87	해맑은소아청소년과의원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96 (구월동)
88	행복드림의원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8 (구월동, 5층, 6층일부)
89	홍외과의원	홍**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70 (구월동)
90	후생의원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772 (간석동)
91	Dr.송내과의원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45 (만수동, 희망프라자301호)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4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3월 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 57외 7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80번길 113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랑(8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랑(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3.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12-1외1 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	57	20091116	돌샘이 있었다는 옛 유래를 인용하 여 제명	2014.03.1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촌로 5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7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9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903	20090706	백제,고구려,신라 시대에 사용되었 던 인천의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4.03.1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매소홀로 903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03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287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80 번길	113	20091116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 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3.1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180번길 113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13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703	20090706	앵고개라는 고개를 관통하는 도로 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3.1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 703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03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9-27외2 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76 번길	5	20091116	용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 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3.1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용천로176번길 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를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7-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개동로38 번길	27	20091116	북개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 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3.1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북개동로38번길 2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7을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7-17외 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개동로38 번길	31	20091116	북개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 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3.1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북개동로38번길 3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1을 건물번호로 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7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2번 길	41	20091116	만월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3.1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월북로2번길 4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1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80번길	1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287	2014.03.1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2-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55	2014.03.1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2번길	11-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280	2014.03.1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2번길	4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280	2014.03.1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